

일반사무 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강남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위탁자”라 함)와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(이하 “수탁자”라 함)는 2025년 9월 25일자에 체결한 일반사무 위탁계약서(이하 “원계약”이라 함)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[5]일 다음과 같이 일반사무 위탁계약 변경계약서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의되거나 구체적인 문맥에 의해 분명하게 달리 의도되지 않는 한, 원계약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.

제2조 (원계약의 변경)

원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- 다 음 -

[변경 전]	[변경 후]
제8조 (보수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보수는 위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득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자가 매입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시점부터 지급하며, 위탁자의 매 결산기 재무제표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각 기간별 보수를 각 기간별 실제 경과한 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(현행과 동일)	제8조 (보수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보수는 위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득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자가 매입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시점부터 지급하며, 매 [6]월, [12]월 말일로부터 [10]영업일 이내에 아래 각 기간별 보수를 각 기간별 실제 경과한 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(현행과 동일)

3.(현행과 동일)	3.(현행과 동일)
③ (현행과 동일)	③ (현행과 동일)

제3조 (본 변경계약의 효력)

- ① 본 변경계약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본 변경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계약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변경되고, 당사자들의 권리, 의무도 본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원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.
- ③ 본 변경계약에 의하여 명백하게 변경, 수정 또는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, 원계약 및 그와 관련하여 체결된 다른 모든 문서상의 모든 내용은 계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유효하며, 본 변경계약 체결일 이전에 원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.
- ④ 본 변경계약과 기존계약 사이에서는 본 변경계약이 우선하고, 원계약의 내용 중 본 변경계약의 내용과 해석상의 모순, 충돌되는 내용은 본 변경계약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변경되는 것으로 하되, 본 변경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계약에 따르기로 한다.

제4조 (준거법 및 관할 법원)

- ① 본 변경계약 및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.
- ② 본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으로 해결한다.

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12월 [5]일

“위탁자”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코람코자산신탁 내(삼성동)

회사명 : 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강남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

법인이사 :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(인)



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12월 [5]일

“수탁자”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, 44층(여의도동, 파크원타워1)

회사명 :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

대표이사 : 김 영 수

